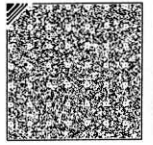


희망의 새 시대! 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



국 세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법인세 신고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금년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니 소속 회원님들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1부. 끝.

국 세 청

수신자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국세조사관 민준기

계장

이광섭

과장

전결 2017. 2. 24.
김지훈

협조자

시행 법인세과-489

(2017. 2. 24.)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 <http://www.nts.go.kr>

전화번호 044 204 3313

팩스번호 050 31142712 / gtg7777@nts.go.kr

/ 비공개(6)

호국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2017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개선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2.27.(월) 개통할 예정이오니 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은 붙임 '세무대리 수입등록·동의 관련 홈택스 이용방법' 참조

2. (조기 전자신고) 3월 마지막 주에 파일변환, 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파일 변환, 변환결과 조회를 가급적 3.24.(금)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 부속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금년은 4.10.까지)에 pdf파일로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자기검증 검토서식 제출) 금년에는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10종의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하는 경우 검토 서식명을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검증 검토서식 전자제출 시 파일명 지정 요령

검토서1.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pdf

검토서2.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pdf

5. (설문조사 참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1.(수)부터 3.31.(금)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설문조사 접근경로(3가지 방법)

1) 「홈택스」 홈화면 → 고객센터 → 설문참여

2)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화면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하단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6. (기타)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무대리 수임등록 · 동의 홈택스 이용방법

**세무대리 수임등록 · 동의
홈택스 이용방법**

2017. 2. .



국 세 청

세무대리 수임등록 개요

□ 세무대리 수임등록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이 이를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

□ 수임등록 절차

- (세무대리인)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 인적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정확히 입력
- (세무대리 의뢰인)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사항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신용카드로 정보제공 범위 및 동의 등록하거나 세무서를 내방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제출

* 세무대리 의뢰인은 홈택스>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에서 자신이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해임가능

□ 수임등록 종류

- (세무대리) 세무대리 의뢰인의 고지·체납 등 수임납세자 정보 조회 업무 및 증명발급, 휴폐업신고, 전자고지 신청 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 이용가능
- (신고대리)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회 등 신고대리 서비스 이용

* 신고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일반정보 조회만 가능, 증명발급과 각종 신청업무는 처리 불가

세무대리 수임등록 업무별 절차

①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 세무대리인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첫 화면에서 수임납세자 등록을 선택



② 세무대리 의뢰인의 등록사항 입력

- ①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요청한 정보제공 범위(타소득 포함, 해당사업장)를 정확히 입력
- ② 개인은 타소득포함과 해당사업장 중 선택,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타소득포함은 한번만 선택되므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수임납세자 등록상황의 상세조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여 다른 세무대리인 수임여부를 확인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선택

세무대리

수입납세자등록 핸드폰번호, 메일주소는 세무대리의뢰인의 전자인내, 증명발급인내 등에 활동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의뢰인

유형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업일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업입력

기장수입내역

수입일자

세무대리의뢰인의 정보 및 관련서비스 제공

정보제공범위

☒ 타소속포함
☐ 해당사업장

정보제공범위

타소속포함

세무대리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속(사업소속, 부동산소속, 기타소속)

해당사업장

등록한 사업장번호에 해당하는 소속

타소속포함

수입등록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한 납세자에 대하여 한 건만 가능합니다.

등록하기

③ 세무대리 의뢰인(납세자)의 동의

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세무대리정보 사항을 이용

HomeTax

조회/발급

증명발급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조회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주민번호수취권한관리조회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매입관리(매발상)

과세전환면세사업자 조회

수신전용메일 신청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전자(세금)계산서XML 원본보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자영업)

자료처리현황 조회

자료처리현황 입찰조회

제출통의현황조회

영수증 발급기관 연혁(내) 안내

세무대리정보

나의세무대리인(수입)동의

나의신고대리인동의

나의세무대리인조회

발급된 증명정보

나의세무대리인 현황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과세유형전환

사업통계작성고현황

주휴면허상대

기준(단순)광비율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복합청구신청발행

복합청구신청발행자료

위장회회의자료

과세자료조회

지급보통점상가격 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관급급찾기

기준시가 조회

세금 신고 납부

세금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납부정보조회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현지가입고유번호 조회

납부내역 조회

미납세금 납부결과 조회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납부일정 변경

근부정리금·자녀장려금

소득기회확보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여부 조회

주택용 기금(기) 조회

주택용 기금(기) 조회

현제전수청부조회

실사건합산합의조회

한금금 조회

전자고지 조회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조회

현금영수증 수정

현금영수증 발급유연

사업종단통기

소득결정자복지카드

- ② 세무대리정보 중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선택하고 정보 제공 범위 및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나의납세자번호	나의개업일자	나의상호명	세무대리인사업자번호	세무대리인상호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수임일자	정보제공범위	동의여부
210-	200-		120-	세무회계...	02-	2015-02	해당 사업장	동의 ☒ 거부 ☐

- ③ 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pop-up 창을 열어주고 활성화된 pop-up의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거부)가 처리됨

- ④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동의 방법
(세무서 방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

- ①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등
 - ②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